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8 선고 2019나10537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8 선고 2019나1053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1 선고 2017가단70169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이선숙

피고, 항소인1. B 주식회사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벳

담당변호사 안준석, 이해진

변론 종결2020. 8. 11.

판결 선고2020. 9. 8.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1. 선고 2017가단70169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7. 8.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7. 10. 29.까지는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하고, 통틀어 '피고들'이라 한다),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7. 8. 30.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7. 10. 29.까지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소장 부분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참조).

제1심법원이 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분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8. 3. 21.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 및 제1심 판결 선고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8. 9. 7.경 F대학교와의 분쟁으로 원고와 연락을 하던 중 원고로부터 제1심판결문을 팩스로 송달받고서야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고 2018. 9. 19.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자신들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이 위와 같이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16. 2. 24.경 F대학교 총장과 F대학교, H대학교의 시내·외 통학버스 운행 위탁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반용역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16-22-1호)

- 용역명 : 시외 통학버스 운행 위탁 용역
- 계약보증금 : 일금이억원정(200,000,000)
- 계약기간 : 2016년 2월 29.일부터 2017년 12월 2.학기 종료일까지(방학기간 제외)
- 기타사항 : 세부사항은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사항으로 한다.

일반용역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16-22-2호)

- 용역명 : 시내 통학버스 운행 위탁 용역
- 계약보증금 : 일금이천오백만원정(25,000,000)
- 계약기간 : 2016년 3월 2.일부터 2018년 2월 28.일(일부 노선의 경우 12월까지)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채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은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등으로 계약담당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I공제조합 또는 공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사업단체가 발행한 채무액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제4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교비에 귀속한다.

시외 통학버스 운행 위탁용역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

제6조(을의 의무) ③(대체 차량 운행 금지) "을"은 통학버스 배차시 "을" 소속 이외의 차량을 배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통학버스의 고장 등을 이유로 대체 운행이 필요한 경우 "을"은 48시간 이전에 사유를 명시하여 "갑"에게 통지하고 서면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체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학생 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을"이 본 계약 조항을 이행하지 못하고 통학에 지장을 주었을 시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2일 전까지 "갑"의 서면허가를 득하지 못한 무단 대체 차량을 운행했을 경우, 대체 차량 당 20만 원을 "갑"에게 7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을"이 본 계약에서 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명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을"의 계약 사항 위반 내용 및 청구사항을 "갑"은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④ "갑"의 서면 통보 2회에도 불구하고 "을"이 시정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 계약은 별도의 통지 없이 해지된다.

제14조(계약 해지의 효과) ① 제13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이 "갑"의 구성원과 맺은 모든 개별 운송계약은 별도의 통지 없이 즉시 해지되며, "을"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불규정에 따라 기 수령한 운송료를 즉시 현금으로 "갑" 또는 "갑"의 구성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송료 반환은 계약해지에 따른 제8조에 정한 위약벌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5조(계약의 해석) ① 계약에 있어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② 계약서

④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

④ 입찰유의서(첨부7)

②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나. 원고는 2016. 7. 26. 피고 회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가	E	200,000,000원	F대학교	2016. 2. 29.~2017. 12. 31.	계약보증금
나	G	25,000,000원	F대학교	2016. 3. 2.~2018. 2. 28.	계약보증금

다. 피고 C, D은 위 증권번호 E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 C은 위 증권번호 G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각 피고 회사가 장래에 부담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보험자 F대학교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7. 31. F대학교에 위 각 계약보증금 합계 2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 회사가 F대학교와의 이 사건 용역계약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여 F대학교는 원고에게 원고가 발행한 각 보증보험증권에 기하여 계약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F대학교에 22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200,000,000원, 피고 회사와 피고 C은 연대하여 2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들 피고 회사가 대체 차량을 운영한 것은 F대학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인 위 용역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F대학교에 계약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주채무가 발생한 바 없고, 주채무가 발생했음을 요건으로 하는 원고의 구상금 청구 역시 이유 없다.

나. 판단

원고의 구상금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채무가 존재하여야 하므로, 피고 회사의 F대학교에 대한 계약보증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용역계약 위반 여부를 먼저 살핀다.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F대학교 역시 피고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통학버스 대수만으로는 모든 학생들이 통학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과 피고 회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차량 대수를 예측하여 48시간 이전에 사유를 명시하여 F대학교에게 통지하고 서면 허가를 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8시간 이전의 서면 허가 없이도 피고 회사에게 대체 차량을 추가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되 수도권 및 지방외곽노선 배차표를 작성하고 운행한 기사들의 사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통학버스 차량을 운행하는 데에 동의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 회사는 F대학교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도권 노선에 통학버스 25대, 지방 외곽노선에 통학버스 7대를 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F대학교 재학생 8천여 명 중 서울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은 4천여 명이고, 통학 시간 등 일정한 시간에 학생들이 물리게 되어 위와 같은 통학버스 운행 대수로는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

- ③ 피고 회사는 2016년 1학기 개학일에 통학버스 부족으로 학생들이 수업 참여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2016년 여름방학 기간 동안 K(주), L(주), M(주), N와 각 전세버스 운송 계약을 체결하여 24대의 추가 대체 차량을 확보하고, 수도권 및 지방외곽노선 배차표를 작성하고 운행한 기사들의 사인을 받은 서류(을 제3호증의 1)를 제출하였다.
- ④ F대학교는 2016. 10.경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서면 허가 없이 대체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적발되기 전까지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
- ⑤ 피고 회사는 2017. 2. 20. F대학교의 요청에 따라 위 감사 결과에 따른 보완조치로 대체차량 회사와 체결한 전세버스운송계약서를 제출하였다.
- ⑥ 이 법원 증인 J은, 피고 회사의 대체차량 운행은 F대학교 학생지원처와 의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다. 소결론

따라서 F대학교의 동의하에 피고 회사가 대체 차량을 운행한 데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대체 차량 운행 금지 위반에 기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므로, F대학교는 피고 회사에 대해서 계약보증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 회사에 위와 같은 계약보증금 지급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창현

판사김용한

판사노태현